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0941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남재훈

변론 종결2024. 10. 11.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21,503,9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1,503,9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E	F (주)	2018-06-22		2,253,512	24.00%
E	G (주)	2020-10-13	2025-10-05	15,000,000	16.90%

나. E는 위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9. 13.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25.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3179호).

다. E의 2024. 2. 14. 기준 위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2024-02-14	F (주)	2,253,512원	21,200원	317,777원	624,068원	3,216,557원
2024-02-14	G (주)	12,839,220원	20,600원	870,610원	4,556,991원	18,287,421원
합계		15,092,732원	41,800원	1,188,387원	5,181,059원	21,503,978원

다. 원고는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위 각 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E는 이를 송달받았다.

2022-09-29	자산양수도계약	F (주)	A (유)
2022-02-17	자산양수도계약	G (주)	A (유)

라. 한편, E는 2018. 7. 25.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21. 6. 10.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1. 9. 28.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주식회사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을 제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43,000,000원인 점, ②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20. 2. 5. 신용대출을 받아 E의 채무 44,300,000원을 대신 변제한 점, ③ 피고는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에 관하여 혼인생활 중이자 이 사건 증여계약 전후인 2021. 4. 22.에 71,743,458원(= 36,343,458원 + 35,400,000원.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 2021. 4. 30.에 81,315,197원(주식회사 J에 대한 채무), 2021. 7. 5.에 81,314,202원(주식회사 J에 대한 채무), 2021. 7. 5.에 29,967,179원(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 합계 264,340,036원(= 71,743,458원 + 81,315,197원 + 81,314,202원 + 29,967,179원)을 대신 변제한 점, ④ 피고는 E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E가 경제력이 부족하고 경제관념이 없다는 이유로 불화가 생겼고, 2021. 6. 10.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21. 9. 28. 협의이혼 하였으며,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은 단순히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혼인생활 중 대위변제한 E의 일반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액수, 피고와 E의 이혼 경위, 피고가 이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형우

별지